

##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

# 표준 소프트웨어의 유료 라이선스에 관한 이용약관

2021. 12.

### 1. 총칙 - 적용 범위

- 1.1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발루프코리아(이하 “발루프”라고 합니다)가 고객(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표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약관은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 1.2 표준 소프트웨어의 유료 라이선스에 관한 본 소프트웨어 조건(이하 “**소프트웨어 조건**”이라고 합니다)의 목적에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표준 소프트웨어의 무료 라이선스; (b) 고객의 사업장 또는 구내에 소프트웨어 설치; (c)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소 개별 설정 (커스터마이징); (d) 고객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확장; (e) 고객의 필요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개조; (f) 고객을 위한 사용자 교육; (g)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만, 위 사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1.3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발루프가 명시적으로 그 유효성에 대하여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발루프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과 충돌하거나 이를 벗어나는 조건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규정되지 않는 고객에 관한 조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표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관하여 발루프와 고객 간 체결된 모든 약정은 본 소프트웨어 조건 및 해당 개별 계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1.5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자연인, 법인 또는 조합, 대한민국 상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 따른 상인, 대한민국 상법 제 169 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 계약의 목적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2.1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목적은 라이선스 문서에 기재된 발루프 표준 소프트웨어(이하 “**계약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유료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설명은 라이선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문서는 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고객의 요청 없이도 제공됩니다.
- 2.2 “**라이선스 문서**”는 제품 번호 코드 또는 자재 번호, 제품 데이터 시트 및 설치 가이드/작동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 2.3 계약 소프트웨어는 실행 프로그램 코드로 구성됩니다. 소스 코드는 계약의 목적물이 아닙니다.
- 2.4 계약 소프트웨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로열티가 무료인 타사 소프트웨어(이하 “**OS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OS 소프트웨어와 해당 O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의 목록은 계약 체결 전 또는 늦어도 계약 소프트웨어 제공 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2.5 타 제공자로부터 OS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약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제품은 오직 계약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2.6 발루프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계약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보호조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계약 소프트웨어의 제공 - 버전

- 3.1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닌 한, 발루프는 고객에게 제공 당시 현행 버전의 계약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 3.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소프트웨어는 발루프의 재량에 따라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를 통해 제공되거나, 다운로드를 통해 계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다운로드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4. 사용권 - 백업 복사본

- 4.1 발루프는 고객에게 비독점적인 (a) 정기결제 형태로 지불되는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대한 한시적인 사용권(“구독 라이선스”) 또는 (b) 일시결제 형태로 지불되는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영구 라이선스”)을 부여합니다. 그 차이는 라이선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라이선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독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 4.2 라이선스의 효력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제공 시부터 발생합니다.
- 4.3 라이선스 시작 시 고객은 라이선스 문서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조항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권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사용의 허용 범위에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 작업 메모리로의 로딩, 화면 표시 및 실행과 고객의 사업목적에 따른 계약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사용이 포함됩니다.
- 4.4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사용은 합의된 목적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목적국은 고객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입니다.
- 4.5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계약에 따른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4.6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백업 복사본”이란 원본 소프트웨어가 뜻하지않게 손상되거나 삭제될 경우에 만들어지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사본은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원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고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백업 복사본의 사용은 발루프가 본래 제공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본이 손상되거나 유실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객은 백업 복사본의 사용에 관하여 본 소프트웨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7 발루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제 3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 리스, 대출, 또는 서브라이선스 포함)
- 4.8 고객이 비독점적인 영구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고객은 발루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균등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 3 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해당 제 3 자가 라이선스 문서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포기하고 중단하여야 하며, 모든 백업 복사본을 삭제하고 파괴하여야 합니다.  
발루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 소프트웨어가 실물 형태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은 제 3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에 한하여 라이선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료 라이선스에 대하여도 동일합니다.
- 4.9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편집하거나, 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디컴파일하거나, 역어셈블(disassemble)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계약 소프트웨어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01 조의 3, 제 101 조의 4, 제 101 조의 5의 엄격한 강행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4.10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을 “패치”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사소한 프로그램 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기본 기능 및/또는 기본 기능의 수정을 포함하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업그레이드”는 기능의 중대한 확장을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패치 또는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본 소프트웨어 조건이 적용됩니다.  
발루프는 고객에게 패치나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4.11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다른 권리,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상표, 영업비밀, 노하우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은 발루프가 보유합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표시, 특히 저작권 고지, 브랜드, 일련번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제거되거나, 수정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 ## 5. 라이선스 사용료
- 5.1 라이선스 사용료는 발루프의 해당 견적서에 명시되며, (a) 일시 요금 및/또는 (b) 정기 요금 형태 및/또는 (c) 발루프의 해당 견적서에 명시된 시간 간격에 따라 로열티 형태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 5.2 계약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해당 견적서에 규정된 추가 요금이 일시 요금 및/또는 정기 요금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발루프의 해당 견적서에 추가 요금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5.3 정기 요금은 각 청구 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일부 기간의 경우 30 일을 1 개월로 보고 이에 비례하여 요금이 청구됩니다.
- 5.4 모든 사용료에 대한 지불 조건은 발루프의 해당 견적서에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5.5 발루프는 현재의 라이선스 및 사용 요금과 청구 기간을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 개월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해당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월말까지 3 개월 전 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6 구독 라이선스의 경우, 발루프는 (a) 고객이 연속한 2 기의 정기 요금 또는 그 중 상당 부분의 지불을 연체하거나 (b) 2 기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기 요금의 연체 금액이 2 기의 정기 요금에 달하는 때에는 임시로 해당 고객이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객이 지연이자, 독촉비용 및 요금을 포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정기 요금을 모두 발루프에게 지불한 때에는 발루프는 다시 고객이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의 10.2 조에 따른 발루프의 권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5.7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 합의된 가격은 순 가격, 즉 외국의 세금을 공제한 후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 세금”은 법인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상품서비스세, 기타 원천징수세, 관세, 또는 기타 추가 요금과 비용, 기타 수수료와 세금으로서, 외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모든 외국 세금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발루프가 해외 및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세증명서, 과세평가 및 기타 모든 서류를 발루프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고객의 의무
- 6.1 고객은 발루프의 해당 설명서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6.2 계약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 6.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이 계약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 6.4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루프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합의한 요금으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6.5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due care and diligenc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 6.6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관하여 발루프가 제공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7 고객은 적절한 조치,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보호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계약 소프트웨어를 허가되지 않은 제 3 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6.8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예. 일일 데이터 백업 관련)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6.9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오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발루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6.10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 또는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경우, 고객은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7. 결함에 대한 책임

- 7.1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아무런 오류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으며, 이는 계약 소프트웨어도 동일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7.2 계약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라이선스 문서에 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서 내의 정보는 성능 설명서로만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보증서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 7.3 계약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관하여 발루프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은 라이선스 문서와 계약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의도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스스로 계약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적 특성 및 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7.4 계약 소프트웨어의 영구적인 제공을 위하여, 발루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7.5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고객의 모든 권리의 행사는 6 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라이선스 키가 제공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 7.6 고객과 발루프가 개별 약정으로 발루프의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합의한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합의된 세부사항은 결함 및 오류 제거의 범위와 시간적 제한에 적용됩니다.
- 7.7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권리는, 합의된 품질 또는 추정 품질 수준과의 편차가 사소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며 사용성에 경미한 정도의 방해만 있는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 7.8 발루프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조작, 또는 계약 소프트웨어에 부적합한 고객의 사업장 또는 구내의 운영 조건에 기초한 결함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7.9 고객이 결함의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발루프는 재량에 따라 이를 개선하거나 오류 없는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루프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통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7.10 결함의 제거에 3 회 실패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요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7.11 고객은 법률 규정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범위 안에서 배상 및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배상 청구는 제 9 조에 명시된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 7.12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하여 발루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명료하고 상세한 설명과 가능하다면 결함을 입증하는 기록을 동봉하여야 합니다. 오류 통지는 발루프가 결함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7.13 결함 제거의 범위 내에서, 발루프는 재량에 따라 전화, 이메일, 또는 원격접속을 통한 원격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루프에게 자신의 시스템 및 이에 설치된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객은 발루프의 요청 시 원격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 8.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 8.1 제 3 자가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의 이용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루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야 합니다. 발루프는 재량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클레임을 이행하거나, 클레임을 거부하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발루프에게 법적 방어와 합의 교섭에 관하여 결정할 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객은 발루프에게 개별 사안마다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방어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루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8.2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소프트웨어의 계약상 사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발루프는 적절한 기간 내에 산업재산권 침해의 원인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발루프의 재량에 따르며, 발루프는 계약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변경 또는 대체하여야 합니다.
- 8.3 발루프는 계약 소프트웨어가 계약에 따라 사용된 경우에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 소프트웨어가 고객 또는 제 3 자에 의하여 변경되었거나, 발루프가 제공하지 않았거나 발루프의 사전 서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와 결합되었거나, 이에 위탁되었거나, 함께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 3 자의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에는 발루프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발루프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고객은 최초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발루프를 그로부터 면책하여야 합니다.
- 8.4 고객이 제기한 배상 청구는 제 9 조에 명시된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 9. 책임

- 9.1 발루프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기타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의무의 위반,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한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기 책임 제한은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보증 또는 조달 위협의 인수, 중대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 또는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보증 또는 조달 위협의 인수,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의 경우는 제외하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손해는 발루프가 알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발루프가 발생 가능한 결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통상의 계약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 9.3 9.2 조에 따른 통상적인, 예견 가능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손해건별 : 해당 개별 계약의 순 구매 가격의 범위 내에서 최대 손실
  - b) 연도별 : 고객이 전년도에 발루프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순 매출액을 넘지 않는 최대 손실. 계약기간 첫 해의 경우, 고객이 손실 발생 전 발루프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순 매출액을 넘지 않는 최대 손실
- 9.4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적 손실은 9.2 조에 따른 계약상 통상적인, 예견 가능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상실 또는 손실 등).
- 9.5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루프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법 제 396 조 및 제 763 조에 따라 발루프의 경제적 사정, 사업 관계의 유형, 범위 및 지속기간, 고객의 원인 제공 및/또는 과실의 기여를 발루프에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발루프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 비용, 경비의 배상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 9.6 책임의 제한은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9.7 고객의 피해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상기 조항들과 무관합니다.
- 9.8 9.1 조 및 9.2 조에 따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란 해당 의무의 이행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필수적이며 고객이 해당 의무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9.9 고객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모든 데이터 백업 조치를 하였고 기계 관동이 가능한 포맷으로 저장된 데이터 자료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발루프는 데이터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10. 기간 - 취소 - 해지 - 사용권 만료 - 반환**
- 10.1 구독 라이선스의 경우,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은 라이선스 시작 시 개시되며 12 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만료 3 개월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한, 계약은 다음 1 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갱신됩니다.
- 10.2 발루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 중 하나는 고객이 계약 소프트웨어를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구독 라이선스의 경우, 특히 고객이 (a) 연속한 2 기의 정기 요금 또는 그 중 상당 부분의 지불을 연체하거나 (b) 2 기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기 요금의 연체 금액이 2 기의 정기 요금에 달하는 때에도 발루프에게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발루프는 손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률상 권리와 청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10.3 계약의 해지와 취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0.4 라이선스된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관한 고객의 사용권은 (a)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b) 대체물의 제공,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의 경우에 만료됩니다. (b)의 경우,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대체물 제공,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적용됩니다.
- 10.5 고객의 사용권이 만료된 경우, 고객은 모든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s), 백업 복사본을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본 및 라이선스 문서를 삭제하거나 파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발루프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루프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 11. 비밀 유지**
- 11.1 소스 코드를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제외), 발루프가 "비밀"로 표시하였거나 비밀로 간주하는 라이선스 문서 및 기타 자료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비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 11.2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은 비밀정보를 엄격한 기밀로 취급하고 제 3 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11.3 고객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단 합리적인 수준보다 경하지 않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11.4 본 제 11 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다음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이미 공적 영역에 있거나 공중에 알려졌거나, 고객에게 통지할 당시 최신(state of the art)의 정보이었던 정보
  - b) 공개 당시 이미 고객에게 알려진 정보
  - c) 고객의 과실 없이 추후에 공적 영역에 포함되거나 공중에 알려졌거나, 최신(state of the art)의 정보가 된 정보
  - d) 허가 받은 제 3 자에 의하여 고객에게 공개되거나 고객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정보
  - e) 고객이 제 3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거나 제 3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대하여 발루프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12. 반출 제한**
- 12.1 당사자들은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반출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특히,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거나, 계약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기술의 국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대한민국, 유럽연합 및 미국의 반출입 통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루프의 계약의 이행은 그 이행에 반출입에 대한 법률의 국내 및 국제 규정과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장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12.2 고객은 발루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권 부여에 대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공식 허가를 위하여 정부 기관에게 계약 소프트웨어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반출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반출이 금지되는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계약 소프트웨어를 반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의 등록된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와, 고객 및 연관 회사의 계약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13. 이행지 - 관할 - 준거법

- 13.1 발루프의 등록 사무소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양 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의 이행지로 간주됩니다.
- 13.2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 13.3 본 계약관계는 법률조항 간 충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 fo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발루프코리아(유)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210 호, 16506

전화 : +82 31 8064 1757

Sales.kr@balluff.co.kr

[www.balluff.kr](http://www.balluff.kr)